

웹 접근성 관련 해외 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The trends analysis of foreign polices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in Korea

현준호*, 최두진**

목 차

- I. 서 론
 - II. 웹 접근성의 개념 및 중요성
 - III. 해외 웹 접근성 동향
 - IV.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정책 동향
 - V.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참고문헌

Key Words: 웹 접근성, 정보격차, 접근성 국내외 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s of Policies and law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U.K, Australia, Japan and EU and then propose polices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 First, the awareness promotion programs, i.e seminars, campaigns, contests, etc., should be provided. Second, Korean standards and guidelines which have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Third, Web accessibility specialist should be trained. Finally,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should be amended as the Section 50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연구부 연구원, jhyun22@kado.or.kr, (02)3660-2656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연구부 부장, djchoi@kado.or.kr, (02)3660-2651

I. 서론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개인, 기업, 국가 활동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뱅킹, 재택근무, e-Learning,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 및 경제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 정보화 등을 통해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보지 못하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등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터넷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변동 요인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애인구의 증가 문제이다(심상완, 2002). 통계청(2001)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보건복지부(2003. 6)가 발표한 장애인 출현을 예측에 따르면 1997년 장애인 출현율이 2.51%이던 것이 2004년에는 3.69%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04년 추정 장애인 수는 약 17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현재 정보와 지식 기반인 지식 정보화 사회(Knowledge Information Society)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

력과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 능력 및 보유 여부가 개인, 기업, 나아가 국가 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제환경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구 경제의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 경제의 핵심자원인 정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Drucker1993; Reich 1992).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개인, 조직 및 국가가 있는 반면, 정보·지식의 독점 및 불평등으로 인하여 이를 향유하지 못해 기존의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불평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Accenture and UNDP, 2001; Norris, 2001, OECD, 2001). 이를 방지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를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손연기, 2003; 조정문, 2001).

정보격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신체적, 경제적, 지

역적인 격차 등에 대한 논의는 다소 이루어져 온 반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부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웹 접근성 부재를 정보격차 문제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웹 접근성의 개념 정의와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 및 미국, 영국, 호주, 일본과 유럽 연합의 관련 정책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웹 접근성의 개념 및 중요성

1. 접근성 정의

정보통신 접근성(Accessibility) 개념은 이를 정의하는 학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참고).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개념의 다양성 보다는 이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기

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리모콘, 전화, 자동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Thatcher et.al., 2001; 이성일, 2000).

이 중 웹 접근성은 인터넷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표1〉 정보통신 접근성 주요 정의

구 분	정 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와 정보통신 서비스 등 정보통신 제품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 (2002.1 정보통신부 고시)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다양한 능력, 숙련, 요구,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요구사항(ISO 13497, 1997).
Benyon(2001)	장비의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 to equipment)과 모든 잠재적 사용자들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작의 적합성(Operational Suitability)

따라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과 W3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웹 접근성의 중요성

웹의 창시자인 Tim Berners-lee에 따르면, 웹의 힘(Power)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웹 사이트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들 수 있다(Thatcher et. al., 2002).

1)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법적인 규정을 통해 접근성 보장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이윤발생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면, 강제성을 띤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웹 사이트를 구축한 조직이나 단체에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의 규정과 요구사항 강제화를 촉발시킨 2가지 주요 사례는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조직 위원회의 소송과 미국 AOL(America Online) 소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미국, 호주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법제도의 강제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2)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

웹 접근성이 확보가 되면 웹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되며, 이는 결국 국 대상 고객 및 이용 환경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웹 접근성에 대한 보장으로 고객들의 웹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 요인들이 제거됨으로써 웹 사이트를 통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기 개발 등 이용 상황의 확대

접근성이 확보된 웹 사이트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확대됨에 따라, 결국 이러한 경우의 수가 증가되어 이용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의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웹 사이트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의 최신기기 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하게 될 어떤 정보기기에서나 큰 불편 없이 해당 웹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연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따른 상황적 제약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및 기기들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데, PDA, 휴대폰 등도 이제는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접근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웹 사이트의 디자인 및 작업 설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검색엔진의 색인과정에도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트 개편, 다국어 버전 제작 시에도 편리하며, 다른 언어 버전으로 사이트를 추가 제작할 때에도 편의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5) 비용 절감의 효과

초기에는 접근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접근성 개선으로 사이트 제작 총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근성 향상으로 유용성(usability)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증가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감소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며, 접근성에 투자한 만큼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전화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비용,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청구서를 발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도 유리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금액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측에도 유용한 것이다.

6) 홍보 효과 향상

웹 접근성을 고려한 웹사이트라는 인식이 제고되면 사이트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나 단체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le)이 중요하

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웹 접근성 준수는 홍보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자발적 관심유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 제작 담당 실무자 몇 사람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주체인 조직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개인과 조직이 접근성 확보로 인해 얻어지는 혜택을 인지한다면, 자발적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균등기회 보장

웹 접근성을 고려한 웹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면 사용자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조직의 목적과 비즈니스를 위하여 웹 사이트의 활용 범위와 활용 가능 상황을 확대하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이용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한 디자인은 해당 조직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업무, 여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Ⅲ. 해외 웹 접근성 동향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최종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로 맡겨 둘 경우에는 시장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웹 개발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W3C의 WCAG 1.0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전자 및 정보기술의 접근성 표준안(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을 만들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1998년 개정된 장애인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of 1998)을 근거로 표준이 개발되었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 우편업무를 포함하여 연방 부처나 기구가 전자 및 정보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사용할 때는 지나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를 지닌 연방정부 직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지나친 부담이 될 때에는 연방부처나 기구가 장애인이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에 대한 필요지침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단지, 예외적으로 클린저-코헨(the Clinger-Cohen Act)이라는 연방 법률에 적용되는 군사 또는 첩보 체계에 사용되는 국가 보안시스템은 508조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재활법 508조를 근거로 장애인 단체, 산업계,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전자·정보기술 접근 자문 위원회(EITTAAC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전자 및 정보기술의 접근성 표준안”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 중 웹 접근성 지침은 §1194.22에 해당하며, 이는 W3C WCAG 1.0의 중요도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미국에 적용되는 특수 조항들을 추가시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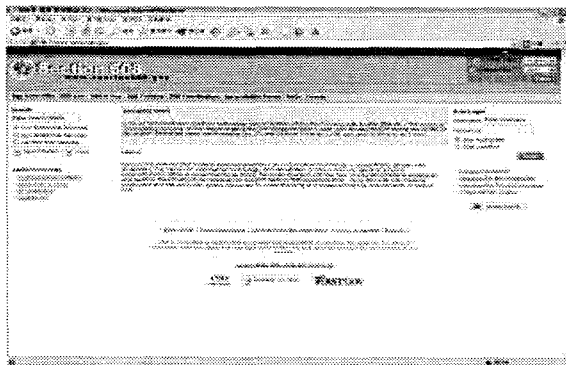
연방정부에서 주도한 웹 접근성에 대한 준수가 현재는 주 정부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비영리단체 및 민간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활법 508조가 연방정부의 IT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3.6)에서 발표한 “미국 조달시장 분석”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장비 및 제품은 843억불이며, 이 중 범용 컴퓨터(7.6%), 통신장비(6.4%) 등 정보기술 관련 제품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조달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IBM, Microsoft, Sun Microsystems 등의 IT 대기업들은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재활법 508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http://www.section508.gov>)를 운영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 구매 정보, 관련 뉴스, 관련 법률, 교육훈련, 접근성 포럼, 이벤트 등 접근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재활법 508조 포털사이트



2. 영국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고용, 상품, 시설,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 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말 영국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e-Envoy 에서는 영국 정부의 웹 사이트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영국은 W3C

WCAG 1.0 기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2월 장애인권리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서는 1995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지침(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의회를 승인을 얻었으며, 주요 골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발하라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이 인터넷 상의 상품, 편의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이나 또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2004년 10월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시에는 접근성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국의 시각장애인 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See it Right)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W3C의 WCAG 1.0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요도 1, 2를 근간으로 하여 See it Right의 체크포인트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평가 프로세스는 기계적 평가(Automated Testing), 전문가의 직접 평가(Expert manual annual Testing), 평가보고서 작성(Report) 그리고 품질 보증 및 인증마크 부여라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검수 결과, 접근성 표준에 부합되면 1년간 “See it Right Accessible” 인증 마크를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 가능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RNIB에서 자체 운영하는 접근성 우수 홈페이지의 리스트에도 등록시켜 준다.

3. 호주

호주에서는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장애인도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그림 2〉 RNIB 웹 접근성 인증마크



※ 출처: www.rnib.org.uk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업, 교육,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더불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정보통신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1999년 6월 호주의 시각장애인 Maguire는 입장권 주문시 정보를 점자 버전으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웹사이트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 등에 불만으로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0년 8월 판결에서,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이미지 맵에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제공하지 않고, 경기 결과 페이지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 24조항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송 판결에 따라, 호주 국민들에게 제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진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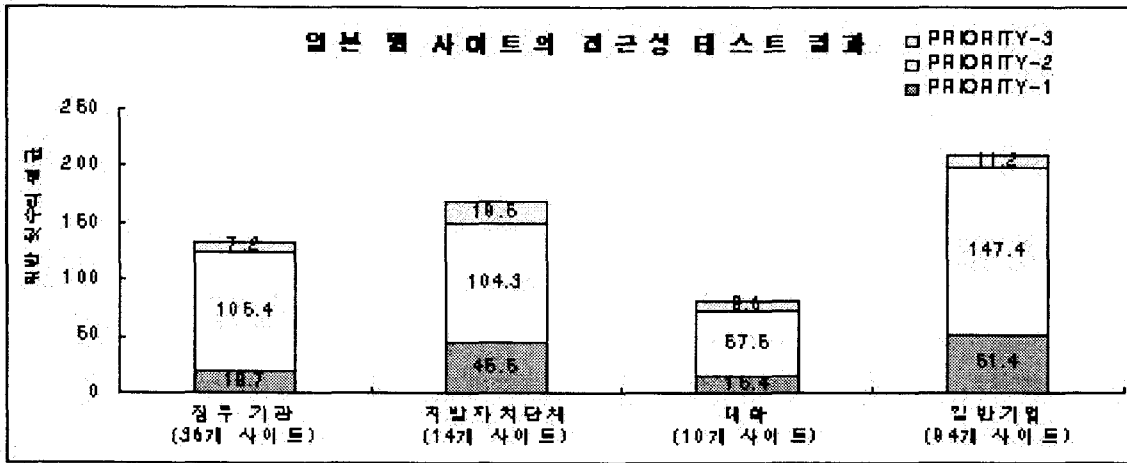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웹 접근성 표준으로 국제 지침인 W3C WCAG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권 및 동등 기회 보장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와 법무부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 인권 및 동등 기회 보장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자 상거래, 새로운 정보기술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에서는 연방정부 및 기관들이 지켜야 할 “최소 웹 사이트 표준 가이드”를 제정하였다.

4. 일본

1999년 5월, 정보통신 접근성 패널(TAP : Telecommunication Accessibility Panel)에서는 정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W3C의 일부 규정을 포함하여 일본의 환경에 맞게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한 TAP는 정보통신 및 우정국, 보건 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지침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보편적 접근 가능한 웹 디자인에 대한 이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웹 접근성 평가 도구인 J-WAS (Jap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improving System)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웹에서 연동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9월에는 J-WAS를 활용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일반기업 등 총 154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여

〈그림 3〉 J-WAS 시범 테스트 결과 (2001년 9월)



※ 출처 : Thatcher et.al., Constructing Accessible Web Sites, Glasshaus, 2002

부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그림 3 참고).

2000년 11월 일본의 IT 기본법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법(Basic Law on the Foundation of an Advance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 Society)”을 제정하였다. 동 법 제 8조에서 웹사이트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e-Japan 정책 프로그램 실행 결과, 웹 사이트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2001년 5월 IT 전략 실행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웹 접근성에 대해 아래의 5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각 장애를 가진 이용자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함
- ②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웹 사이트를 통하여 배포

③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갖추어야 함

④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IT 장비 및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⑤ 노인·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웹사이트의 접근성 체크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련 실험이 수행되어야 함.

5. EU의 e-Europe 정책

유럽연합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보격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설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웹 접근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유럽연합에서는 정보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for All)”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 6월 유럽 의회는 장애인을 위해 웹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2002년 e-Europe 실행계획(e-Europe Action Plan 2002)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 e-Europe 2002 웹 접근성 실행계획

활동내역	행위자	Deadline
회원국간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정보교환 및 성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정보배제(Info-Exclusion) 해소를 위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	회원국, 유럽의회	2001년 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참여(Social Inclusion) 및 고용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 제품의 접근성 표준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출간	유럽의회, 민간부문	2002년 말
접근성 원칙과 관련 제도 및 표준들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수행	회원국, 유럽의회	2002년 말
공공 웹 사이트에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s) 가이드라인 채택	회원국, 유럽의회	2001년 말
국가별 관련 우수기관을 상호 연결시키고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를 위한 웹 접근성 유럽 교육 프로그램(안)을 작성	회원국, 유럽의회	2002년 말

※ 출처 : eAccessibility Group Coordinator, eEurope Action Plan 2002/eAccessibility : WAI Contents guidelines for public sites in the EU, 2002. 12

IV.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정책 동향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유럽연합 동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중 법·제도 개선, 관련 포럼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법·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 중에서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

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등을 살펴보고, 특히 접근성 전반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노인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2002. 12월 개정) 제 16조(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2항에서는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편의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2. 12월 개정) 제 7조(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노령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 3항에서는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2001. 4월 개정) 제 20조(정보에의 접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1999. 1월 개정) 4조(접근권)에서는 장애인등이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 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권장지침 제1장 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권장)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를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장지침 제 2장에서는 정보통신 제품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지침을 9조(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에서 15조(인지능력의 보완)까지 제시하고 있다.

웹 접근성 관련해서는 제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 3장은 웹 문서에 관한 설계지침으로 10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6조(그래픽 및 청각 정보의 보완), 17조(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18조(반응시간 및 움직임의 보완), 19조(독립적인 접근), 20조(적절한 문서의 보완), 21조(프레임의 사용), 22조(표의 사용), 23조(외국어 사용), 24조(탐색과 이동), 25조(새로운 기술의 적용)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법률에서 웹 접근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아직 그 시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 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2002.1월)」이 제정되었으나, 권장사항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세부적인 웹 제작 지침 등이 없어 홈페이지 제작자 또는 관리자들이 웹 접근성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운영 지원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동향, 표준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간의 정보교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2002년 5월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의장 손연기)”의 창립을 지원하였다. 본 포럼은 크게 정책, 정보통신, 웹 접근성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총 3

회의 운영위원회와 7회의 접근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3년에는 3회의 운영위원회와 4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웹 접근성과 관련된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석일 교수)에서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웹 사이트 지침 표준안 개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동향 파악, 웹 사이트 저작도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저작도구 제작 지침 표준(안)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실태조사, 국내외 스크린리더 비교연구, 국내 소프

트웨어의 단축키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2년 9월에는 국제 웹 접근성 평가지침에 따라 웹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rompt” 한국어 버전 개발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3년 9월 개발 완료하고, 이를 무료로 포럼 홈페이지(<http://www.iabf.or.kr>)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2003년에는 홈페이지 관리자 및 디자이너 300명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인식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현재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V.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비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보화의 혜택을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최두진, 2003).

1. 정보통신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웹 접근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기 보다는 관련 개발자 및 기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2003년 3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6%만이 웹 접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또한 권순교(2003)가 2003년 3월 발표한 웹 접근성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웹 사이트 중 30%만이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 대상인 미국의 경우에는 60%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 및 보급,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웹 접근성 관련 우수 제품 소개 및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웹 제작자 및 관리자 등의 인식개선이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연구 확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며 기 개발된 국제 지침을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정보화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수요조사 및 발굴, 관련 연구수행, 기술개발기관 지원, 사후관리 및 상용화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개발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시작부터 개발이 완료되는 모든 시점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할 대상인 “사용자 그룹(Test Group)”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3.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부족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관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에 국

내 전문가를 파견·연수토록 하고, 국내 IT 관련학과에 웹 접근성 관련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 접근성 저변확대를 위해 웹 접근성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이를 민간부문의 웹 프로그래머 및 디자이너들로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법·제도 개선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2002.1월)」을 제정하여 웹 문서에 대한 설계 지침 제공 및 동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침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지만 실질적인 웹 접근성 제고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접근성 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침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재활법 508조 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순교, Is the Internet Accessible to Elderly Individuals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 A Fault-Finding Website Analysis of Governmental Web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 2003. 5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정부조달시장, 2003. 6
3. 손연기,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제 78 회 한국정보화사회 지도자 포럼 발표자료, 2003. 4
4. 심상완, “고령사회대비 복지 과학시루 정책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5. 이성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산업공학회, 2000. 12
6. 조정문,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정보화 정책 8권 2호, 2001
7.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연구 - 요인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2002. 8
8. 최두진, “웹 접근성에 대한 해외동향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 2003. 11
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운영, 2002.12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웹 접근성 인식현황 실태조사, 2003 a
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향상 동향, 2003 b
12. Accenture & UNDP, Creating a Development Dynamic, 2001
13. Drucker, Peter F.,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AY: Harper Press, 1993
14. eAccessibility Group Coordinator, eEurope Action Plan 2002/eAccessibility : WAI Contents guidelines for public sites in the EU, 2002. 12
15. Norris, P., Digital divide :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6.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
17. Reich, R. B., The Work of Nations :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ism, Random House Incorporated, 1992
18. Thatcher et.al., Constructing Accessible Web Sites, Glasshaus, 2002
19. <http://www.section508.gov> [cited 2003. 11. 10]

20. <http://www.rnib.org.uk> [cited 2003, 11, 10]

21. <http://www.e-envoy.gov.uk>
[cited 2003, 11, 10]

22. <http://www.noie.gov.au/> [cited 2003, 11, 10]

23. <http://www.soumu.go.jp/english/>
[cited 2003, 11, 10]

24.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europe/2005/index_en.htm [cited 2003, 11, 10]

25. <http://www.iabf.or.kr> [cited 2003, 11, 10]